

# 농산물안전관리 추진 현황

2005. 10. 12(수)

농림부

## < 목 차 >

I. 농산물안전성관리체계 ..... 1

II. 농산물안전관리 추진현황 ..... 3

# I.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

- 농산물의 수입검사를 포함하여 일반식품의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(식품의약품안전청)에서 관리
  - 다만, 축산물의 경우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에 의해 생산·도축·가공·유통과정까지 농림부에서 일관관리하고 있고,
  - 농산물은 출하단계에서 「식품위생법」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라 농림부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성조사 수행

구 분	1차 생산(품)		2차 생산(품)		유 통 (보관/운반등)	소 비 (식당, 백화점등 최종판매단계)
	재배/사육등	수입	국내가공	수입		
농산식품	농림부	식약청				
수산식품	해양수산부		식약청			
축산식품	농림부					식약청
기 타	환경부(먹는물), 교육부(학교급식), 국세청(주류), 산자부(천일염) 등 부처별 특성에 따라 관리					

※ 수산물의 수입검사는 해양수산부(수산물품질검사원)에 위탁관리

- 검역(Quarantine)은 식품안전성을 다루는 위생검사(Inspection)와는 다른 개념으로 동식물의 병·해충, 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주목적으로 함
  - 식물검역은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식물검역소에서 수행
  - 동물·축산물검역은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
- ※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검사와 검역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업무임

## II. 농산물안전관리대책 추진 현황

### 1.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

- 생산자의 안전성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
  - 매년 1~2월에 시행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, 농업연수원에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관리과정을 추가 편성
    - 새해영농설계교육 : 56만명, 농산물안전관리과정 : 3회, 120명
  - 안전성 교육이수를 친환경인증, 품질인증, 우수농산물관리인증 등의 필수조건에 포함
  -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농산물생산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안전성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함
- '06년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를 종합적인 농산물안전관리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
  -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하여 우수농산물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('05. 8)
    - 시행령,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
  - 표준재배지침을 마련(96품목), 96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

## 2.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

- 분석 시설·장비를 확충하여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한편, 토양·수질 등의 재배환경 및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병원성미생물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
-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분석실(9개)과 별도로 '09년까지 거점 시·군에 정밀분석실 38개를 추가 설치
  - 거점 정밀분석실 : ('04)3개소 → ('05)3 → ('06)4
  - 안전성 조사건수 : ('03)59천건 → ('04)60 → ('05)62 → ('13)90
  - 부적합비율 : ('01)1.2 → ('02)1.1 → ('03)1.5 → ('04)1.3 → ('05.9)1.2
  - \* 폐기, 출하연기, 용도전환 등의 조치로 시장유입 사전 차단 조치
- 토양·용수·자재 등 재배환경과 신선 과일·채소류에 대한 식중독균등 병원성미생물 오염실태 조사를 강화
- 부적합농산물 생산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DB화하여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부적합정보를 공유하며, 정책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 강구
- 부적합농산물 생산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실험정보관리시스템에 DB화하여 특별관리
- 부적합 발생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, 보건환경연구원, 도매시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
- 규격출하자금, 가공원료수매자금, 직접지불제 등 지원에서 제외 조치

### 3. 농산물 표시관리 강화

- 수입 농축산물이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
  -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·내외의 가격차가 큰 78개 품목에 대하여 조기 경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, 기획단속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
    - 사법경찰관리 400명, 77천개 업소 조사 2164개 위반업소 적발('05. 6)
    - 원산지표시 이행율 : ('94)62.2% → ('98)92.5 → ('04)96.1
  - GMO·원산지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**GMO·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** 민간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감시체계 구축
    - 벌칙강화 : 5천만원, 5년이하 징역 → 1억원이하, 7년이하 징역
    - 명예감시원 대폭 증원 : ('04)2,800명→('05.9)11,831→('05)15,000
-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를 도입하고,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추진
  -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하여 이력추적관리의 근거 규정 마련('05. 8)
  - GAP, 친환경(유기·전환기유기·무농약·저농약), 품질인증을 '06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GAP인증의 활성화 추세를 감안하여 GAP, 친환경(유기·무농약)으로 통합 추진

#### 4.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 참여 기회 확대

- 농림부에 “농식품안전자문단”, 농산물품질관리원에 “농소정협의회”를 운영, 모니터링 등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
  - 농식품안전관리 현장 방문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교환 기회 확대
  -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등 농·소·정 협력사업을 통한 홍보를 강화
  
- 식품안전 관련기관간 정보공유·공동활용 강화,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하여 “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”을 구축
  - '09년까지 농림부, 해양수산부의 식품안전업무 정보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
    - 업무절차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(BPR/ISP) 수립('04.10~'05.5, 7개월)
  - '05년, 우수농산물인증관리, 이력추적관리 등 6개분야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
    - 예산 : 43억원, 전자정부지원사업(행정자치부)
    - 기간 : '05. 11 ~ '06. 6(8개월간)